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6
----------	------

발의연월일 : 2020. 6. 30.

발 의 자 : 장제원 · 홍문표 · 정동만  
추경호 · 이철규 · 김석기  
박덕흠 · 윤창현 · 지성호  
조태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④ ~ ⑥ (생략)</p> <p>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제16조제5항</u>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p> <p>3의2. ~ 7. (생략)</p>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u></p> <p><u>⑤ ~ 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제16조제6항</u>----- ----- ----- -----</p> <p>3의2. ~ 7. (현행과 같음)</p>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